

충청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행 정 문 화 위 원 회
수석전문위원 장 용 대

충청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회부경위

이 조례안은 2010년 11월 12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10년 11월 19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2. 제안이유

- 수입증지 구입대금 납부편의를 위하여 신용카드 납부 근거를 신설하고,
- 「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(대통령령)」 개정(2010.9.17)에 따라 용어와 수수료를 동일하게 개정하고,
- 「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등이 개정(2009.5.8)되면서 도지사에서 시장·군수로 변경된 비디오물 제작업·배급업 신고 등에 대한 수수료 징수규정을 삭제하는 등 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기 위함.

3. 주요내용

- 수입증지 구입대금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 근거 신설 (안 제2조제3항)

-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규정(대통령령)과 동일하게 개정 (별표2)
 - 화재증명원 발급신청 : 1통 600원 → 1건 800원
 - 간호조무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 : 1건 500원 → 1건 800원
 - 공인중개사 자격증 재교부 신청 : 1건 3,000원 → 1건 800원
 - 승강기보수업 등록증 재발급 신청 : 1건 20,000원 → 1건 4,000원
 - 공유재산 대부 및 사용허가 신청 : 계속 → 갱신 또는 기간연장
 - 전기공사업의 등록증(등록수첩) 재교부 신청
→ 전기공사업의 등록증(등록수첩) 재발급 신청

- 도지사 신고대상에서 시장·군수 신고(신청)대상으로 변경된 수수료 징수근거 삭제 (별표2)
 - 종합게임장업 등록(지정) 신청 : 1건 20,000원
 - 비디오물 제작업 또는 비디오물 배급업 신고 : 1건 20,000원
 - 비디오물 제작업 또는 비디오물 배급업 변경신고 : 1건 10,000원

4. 검토의견

금번 충청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「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(대통령령)」 개정(2010.9.17)에 따라 용어와 수수료를 동일하게 개정하고, 「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등이 개정(2009.5.8)되면서 도지사에서 시장·군수로 변경된 비디오물 제작업·배급업 신고 등에 대한 수수료 징수규정을 삭제하는 등 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

주요내용으로는

- 안 제2조제3항에서 수입증지 구입대금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 근거를 신설하고
- 별표 2의 수수료를 상위 법령과 동일하게 개정하고,
 - 화재증명원 발급신청 : 1통 600원 → 1건 800원
 - 간호조무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 : 1건 500원 → 1건 800원
 - 공인중개사 자격증 재교부 신청 : 1건 3,000원 → 1건 800원
 - 승강기보수업 등록증 재발급 신청 : 1건 20,000원 → 1건 4,000원
 - 공유재산 대부 및 사용허가 신청 : 계속 → 갱신 또는 기간연장
 - 전기공사업의 등록증(등록수첩) 재교부 신청
→ 전기공사업의 등록증(등록수첩) 재발급 신청
- 별표 2의 도지사 신고대상에서 시장·군수 신고(신청)대상으로 변경된 수수료 징수근거를 삭제하는 것임.
 - 종합게임장업 등록(지정) 신청 : 1건 20,000원
 - 비디오물 제작업 또는 비디오물 배급업 신고 : 1건 20,000원
 - 비디오물 제작업 또는 비디오물 배급업 변경신고 : 1건 10,000원

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입증지 구입대금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근거를 신설하고,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수수료를 변경하고 시장·군수 신고대상으로 변경된 수수료를 삭제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음.

붙임 : 충청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 끝.